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 추가 및 보건지소의 통합 운영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9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 참고자료	16
1. 시·도별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설치 현황	16
2. 2014~2025년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 현황	17
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직종별 인력 현황	18
4. 최근 5년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현황	19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2213695호)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0. 24.

다. 회 부 일 : 2025. 10.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혹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안 제13조의2 신설 등)

- 개정안은 현행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자체가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의사 인력 배치가 어려운 보건지소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u>건강생활지원센터</u> 를 말한다. 2.·3.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 ----- ----- ----- <u>건강생활지원센터</u> 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u>보건진료소</u> ----- 2.·3.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보건지소의 통합운영 등)</u>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u>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u>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9조에 따
른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2. 주요 검토 사항

- 첫째,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조제1호).

※ 보건진료소: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농어촌의료법」 제2조제4호)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생략)

- 현재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은 크게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로 구분됨.

<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 및 현황 >

구분	설치근거	설치 기준	설치 현황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시·군·구별 1개소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추가 설치)	261개소 (이 중 보건의료원 16개소)
보건지소	「지역보건법」 제1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읍·면별 1개소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추가 및 통합 설치·운영) (보건소 설치 읍·면 제외)	1,337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법」 제1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읍·면·동별 1개소 (보건소 설치 읍·면·동 제외)	121개소
보건진료소	「농어촌의료법」 제15조 및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동·리 단위의 오·벽지에 설치	1,895개소

자료: 김동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12. 및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2024.12월말 기준)

-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에 설치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어 진료·건강관리 등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기준 1,337개소가 운영 중임.
-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여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보건의료취약지 중 인구 5,000명 미만의 리·동에 설치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기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1,895개소가 운영 중임(<참고자료 1> 참조).

- 한편 원칙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의에 ‘보건진료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제5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제28조)의 규율을 받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보건진료소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② ~ ⑧ (생략)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거나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 ② (생략) ③ <u>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u>
--	---

- 보건진료소의 경우, 1980년에 최초로 설립된 이후 의사가 없는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충족시켜 왔으나, 도시화에 따른 교통 및 통신의 발달,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진료소 이용 인원이 줄어들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 운영이 어려워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지역별 보건진료소 진료 현황>

(단위: 연인원[명])

구분	2023	2024	2025 *11월 말 기준
합 계	2,709,422	3,177,115	2,831,702
서울	0	0	0
부산	5,790	7,582	6,960
대구	18,400	22,530	22,531
인천	37,339	42,782	39,117
광주	23,252	23,643	24,155
대전	12,117	14,985	13,709
울산	22,618	25,940	21,827
세종	13,606	13,671	12,012
경기	213,106	254,285	227,999
강원	197,051	229,303	209,284
충북	209,548	252,069	224,664
충남	403,204	467,972	386,694
전북	358,887	419,662	376,572
전남	403,338	469,284	434,180
경북	389,200	450,744	407,006
경남	311,000	378,596	335,693
제주	90,966	104,067	89,299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켜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의 운영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보건지소와 통폐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진료소의 기능 개선 유도 및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¹⁾.

□ 다만,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역보건 의료기관에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여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법」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696호)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전제 요건으로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의료법」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경미한 의료행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음.

또한, 법 체계 면에서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면서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의 근거는 「농어촌의료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보임.

□ 둘째,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医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보건지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보건지소에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제한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관한 사항임.

□ 먼저,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医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보건기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도가 낮은 보건지소를 조정·통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²⁾에서도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医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보건지소 총 1,337개소 중 22개의 통합보건지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통합 보건지소의 대표적 사례로 울산 울주군의 경우 온산읍·온양읍·청량면 3개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개소(2010년)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한솔동·도담동보건지소를 통합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개소(2017년)하여 신도시 지역에 제2보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참고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에서는 통합보건지소의 경우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도 일반보건지소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

(단위: 명)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보건지소	1	1	1	3	1
통합 보건지소	1 × 관할 읍·면수	1 × 관할 읍·면수	1 × 관할 읍·면수	3 × 관할 읍·면수	1 × 관할 읍·면수

※비 고 1.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공중보건의로로서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다음,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운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범위의 의료행위³⁾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무의촌 해소와 일차진료기관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보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로⁴⁾를

3)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 이송,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과 부상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 분만 도움, 예방접종, 이와 같은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

4) 공중보건의로제도는 무의촌 해소를 위해 1979년부터 「농어촌보건의료법」에 의거 군복무의 일환으로 공중보건의로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어 3년 동안 복무하도록 되어 있음.

배치하여 왔으나, 공중보건의사는 2021년 3,523명에서 2025년에는 2,551명으로 감소⁵⁾하였으며, 특히 신규 편입 ‘의과 공중보건의’는 2017년 814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참고자료 2 > 참조).

<최근 5년간 기관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단위: 명)

기관종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523	3,365	3,175	2,852	2,551
보건소 · 보건지소	소계	3,041 (86.3%)	2,901 (86.2%)	2,716 (85.6%)	2,414 (84.6%)	2,156 (84.5%)
	보건소	877	828	814	743	704
	보건지소	2,164	2,073	1,902	1,671	1,452
병원선·이동진료반		27	24	24	30	25
국·공립병원		200	195	193	183	162
국가보건기관 ¹⁾		65	61	58	56	60
응급의료기관 등 ²⁾		88	85	85	77	62
보건단체·복지시설 ³⁾		4	4	4	4	3
교정시설 등		96	95	95	88	83

1) 질병관리청, 시·도 역학조사관, 국립검역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2) 응급의료취약지인 시·군 소재 응급의료지정병원

3)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 노숙인 무료진료소 등

- 특히, 2025년 기준 보건지소 1,326개 중 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832개로 62.7%에 이르고, 2026년 공중보건의사 최대 200명 신규 편입을 가정하더라도 전체 의과 공보의 인원이 2025년 946명에서 2026년 697명으로 감소할 예정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 감소 등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5) 의과·치과·한의과 공보의를 포함한 것임.

- 의과 공보의의 ‘보건소’ 미배치율은 2023년 5.2%, 2024년 6.5%, 2025년 14.4%로 증가하였고, ‘보건지소’ 미배치율은 2023년 27.6%, 2024년 45.6%, 2025년 59.8%로 증가하였음.

< 연도별 의과 공보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배치 현황 >

(단위: 개소수, %)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2024년	2025년
보건소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소 수	132	138	132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	125	129	113*
	미배치율	5.3	6.5	14.4
보건지소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 수	1,220	1,223	1,234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지소 수	883	665	496
	미배치율	27.6	45.6	49.8

* '25년 의과 미배치 보건소(19개소)는 시니어의사, 기간제 의사 등을 통해 의과 운영

※ 배치대상 수는 지침상 원칙적으로 배치 가능 또는 예외규정*에 따라 실제 배치(치과, 한의과)되어 있는 개소수를 의미함

(* 인구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치과 및 한의과에 한하여 필요 인원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재량 배치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의과 공보의가 감소하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함에 따라 개정안은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이러한 개정안을 통하여 공중보건 의사 감소, 민간 의사 채용의 어려움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확충·재배치 등을 통하여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농어촌의료법」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한정하여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예외를 둔 것으로, 예외 규정의 관할 범위를 읍·면 지역에까지 확대·적용하려는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⁶⁾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로 현재까지 매년 유사 수준인 1,80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음(<참고자료 3·4> 참조).

「농어촌보건의료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농어촌보건의료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영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6) 「농어촌의료법」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법 체계 운영을 위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고, 보건지소 간 통합운영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익이 적으며, 보건지소 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지역, 자격 요건,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내 민간 의료기관 존재 여부, 원격협진·비대면진료 등 연계 방안, 직무교육 및 인력·예산·시설 기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 ·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법 체계 운영을 위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고, 보건지소 간 통합운영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익이 적으며, 보건지소 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지역, 자격 요건,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내 민간 의료기관 존재 여부, 원격협진·비대면진료 등 연계 방안, 직무교육 및 인력·예산·시설 기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 필요
대한의사협회	·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위기’에는 공감 ·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 불합리한 처우 등 근본적 원인이 개선되지 않은 채, 개정안과 같은 처방은 오히려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우려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합운영은 행정 효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악화시킬 가능성 ·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환자 안전에 위협 초래 가능성

보건진료소장회	· 개정안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 필요 - 보건지소 순회진료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돌봄통합·원격협진 참여 여부, 섬·산간 오지 여부 등 근무 환경에 맞는 보수교육 필요, 전문간호사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전문간호사 수준으로 직무교육(52주) 강화 필요 -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행 6급 승진까지로 적체되어 있는 직급·보직체계 개편과 신규인력을 위한 프리셉터 제도 도입 및 의료업무 수당(현재 25만원/월) 인상 필요
농촌간호학회	· 개정안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 필요 - 해당 통폐합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해당 분야에 훈련된 간호사의 확보 필요 -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필요 - 방문진료, 돌봄통합법 참여 및 원격의료 협진 등을 위한 전문이론과 술기교육 지원, 필요한 검사장비 확보 필요 - 질적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승진 및 보상체계 마련 필요

문 의 처

02)6788-5501

【참고1】	시·도 별 지역내 보건의료기관 설치 현황('24. 12월 말 기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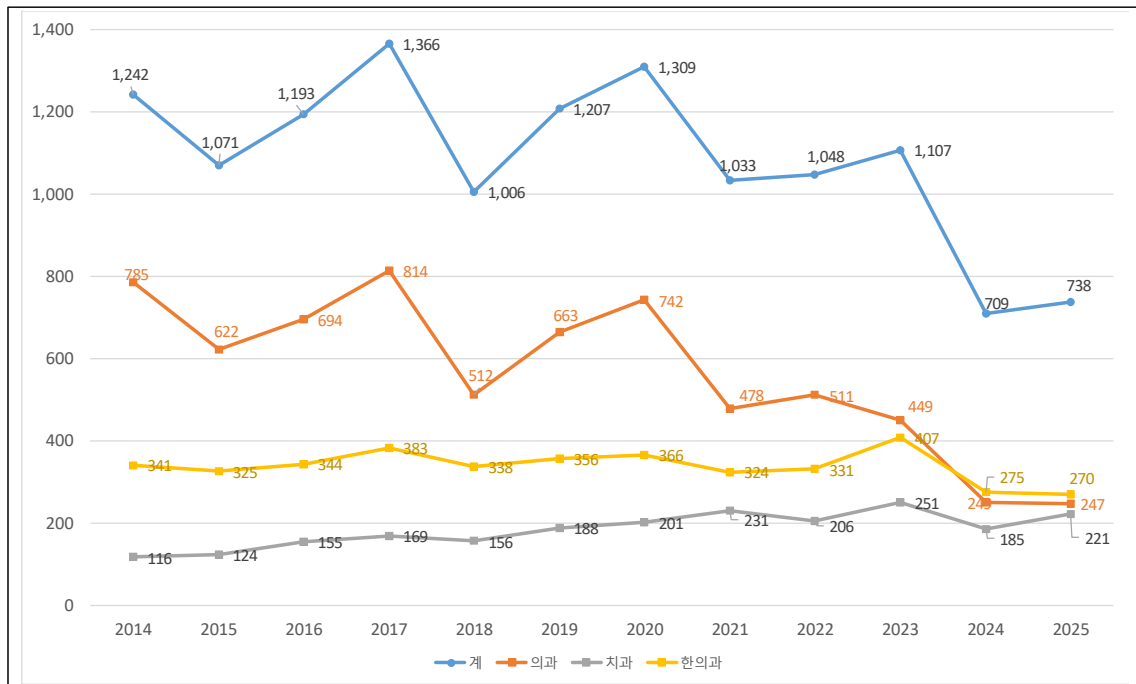
(2024.12. 기준, 단위: 명)

구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합계	261	1,337	121	1,895
서울	25	38	0	0
부산	16	10	16	5
대구	9	16	2	18
인천	10	26	12	25
광주	5	1	9	10
대전	5	6	1	7
울산	5	8	2	11
세종	1	10	1	7
경기	49	114	25	155
강원	18	99	12	129
충북	14	95	4	159
충남	16	150	9	236
전북	15	148	8	240
전남	22	216	8	328
경북	24	216	2	297
경남	21	173	8	220
제주	6	11	2	48

※자료: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현황(2024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참고2】

2014년~2025년 신규 편입 공중보건기사 현황



【참고3】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직종별 인력현황
--------------	------------------------------

(2024.12. 기준, 단위: 명)

구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 계	5,231	1,867
의사	784	0
치과의사	227	0
한의사	722	0
약사	1	0
간호사	1,634	1,827
영양사	98	0
보건교육사	8	0
방사선사	86	0
임상병리사	99	0
치과위생사	272	1
물리치료사	300	0
작업치료사	36	0
간호조무사	427	3
행정직	57	0
보건직	127	0
기능직 등	353	36

【참고4】	최근 5년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현황
--------------	-----------------------------

(2024.12. 기준, 단위: 명)

지역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857	1,838	1,852	1,856	1,827
강원	0	0	0	0	0
경기	4	4	4	4	4
경남	8	8	17	20	18
경북	25	24	24	24	25
광주	10	10	9	10	10
대구	7	7	7	7	7
대전	11	11	11	11	11
부산	7	6	7	7	7
세종	156	153	157	157	153
울산	127	129	130	129	129
인천	156	154	157	155	154
전남	235	236	236	236	233
전북	232	237	234	234	230
제주	319	309	314	312	309
충남	298	296	286	292	286
충북	215	206	211	210	206